
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재결서상 표기방법

1 질의

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재결서상 표기방법

예)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

2 회신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하면, “사업시행자”라 함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하면,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에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, 재결서에 표기하여야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사업인정신청서 및 사업인정고시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.

【2011.3.24. 토지정책과-1399】